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49
----------	------

제출일자 : 2024. 8. 23.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23.8.22.) 및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회계제도과-1802(2023.11.8.)]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을 구체화 및 명확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제5호)
 -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 정비(안 제17조)
-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35조제2항)
 -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및 세분화(안 제63조제1항)
- 다. 조문의 기준·내용·범위의 구체화 및 명확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2항제2호)
 - “군”의 정의 규정(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 수의 대부·사용허가할 수 있는 범위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 대부료 요율 적용 대상 정비(안 제28조제5항제1호, 같은 항 제6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3)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7. 25. ~ 8. 14.)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을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군수는”을 “군수가”로 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역특산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및 명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등록된 생산품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

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8조제5항제1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실경작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 내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연 6회”를 “연 12회”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내 : 6개월 이내 2회 분납
6.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내 : 1년 이내 4회 분납
7.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내 : 2년 이내 8회 분납
8.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u>토지</u></p> <p>3. ~ 4. (생략)</p> <p>5.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u>」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u>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토지의 취득·처분</u></p> <p>3. ~ 4. (현행과 같음)</p> <p>5. <삭제></p>
<p>제17조(무상사용기간)</p> <p>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u>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u>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17조(무상사용기간)</p> <p>----- -----<u>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u> ----- ----- -----.</p>
<p>제20조의2(수의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p> <p>① (생략)</p> <p>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u>군</u> 내의 공유 행정 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p>	<p>제20조의2(수의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p> <p>① (현행과 같음)</p> <p>1. ----- -----<u>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u> -----</p>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달성군
지역(이하“지역”이라 한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
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
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
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군수가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역특산물

1.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
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
특산물 및 명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이 생산한 제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등록된 생산품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생략)

1. 농경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 5. (생략)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 9. (생략)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1. -----실경작자-----

2. ~ 5. (현행과 같음)

6. 군 내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 9.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50만원-----

-----연 12회-----

1. ~ 3.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0만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내 : 6월
이내 2회 분납

6.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내 : 1년
이내 4회 분납

7.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내 : 2년
이내 8회 분납

8.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생략)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3. (생략)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 ⑦ (생략)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24. (생략)

④ ~ ⑥ (생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 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 28. (생략)

② ~ ⑧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2. ~ 5. (생략)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

7. ~ 9. (생략)

□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1.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이하 “농축특산물”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말한다.
2. “명품”이란 제1호의 농축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 등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개정 2018. 7. 20.)
 -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3. (생략)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 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2) 그 외의 농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9. ~ 12. (생략)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 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④ ~ ⑩ (생략)